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809호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공 고

- | | | | |
|----------------|---|--------|----|
| ○ 공 고 제 1336 호 | 만수노인문화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노인장애인과 | 2 |
| ○ 공 고 제 1338 호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 식품위생과 | 5 |
| ○ 공 고 제 1344 호 |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여성가족과 | 6 |
| ○ 공 고 제 1347 호 | 구월4동경로당 리모델링공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노인장애인과 | 17 |

고 시

- | | | | |
|--------------|-----------------------|-------|----|
| ○ 고 시 제 85 호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고시 | 기획예산과 | 20 |
|--------------|-----------------------|-------|----|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336호

만수노인문화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만수노인문화센터의 이용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18.

남 동 구 청 장



1. 행정예고 내용

- 만수노인문화센터 CCTV 설치

2. 설치목적

- 만수노인문화센터 이용자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센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 및 보안성 강화로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하고자 함.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7. 18. ~ 8. 6. (20일간)

4. 의견제출 : 2023. 7. 18. ~ 8. 6. (20일간)

5.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화상정보 보호원칙 : 만수노인문화센터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나.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다.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라. 수집된 정보는 일정기간 저장 후 자동 삭제되며, 권한이 있는 자만 열람 가능

7. 설치장소

○ 만수노인문화센터 내부 CCTV 설치

연 번	주 소	설 치 장 소	수 량	비 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82-41번지 외 1필지	만수노인문화센터	12대	이용자 및 안전사고 예방

8.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령 24조

9. 촬영범위 및 시간

- 만수노인문화센터 내부 시설 및 주차장 24시간 촬영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 노인장애인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나. 제출기간 : 2023. 8. 6. 18:00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장애인과 노인여가시설팀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마. 제출방법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1층 노인장애인과
- 팩스 : 032)453-5859(팩스 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사.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11. 문의사항 : 남동구 노인장애인과 노인여가시설팀 ☎ 032)453-2253

공 고

남동구청 공고 제2023-1338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직권말소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 권 말 소 일 자 : 2023. 07. 18.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3. 07. 18. ~ 2023. 08. 01.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직권말소일)
일반음식점	2020-0202575	싸움의고수 간석오거리 역점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36, 1층 103호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3-06-30	2023-07-18

6. 고 지 사 항

- 본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청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4

2023. 7. 18.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344호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7. 18.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등 (안 제2조)
- 기능 (안 제3조)
- 조직 및 구성 (안 제4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
-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안 제6조)
- 지도·점검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여성가족과
 - 연 락 처 : 전화 453-5992, FAX 453-58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의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등(안 제2조)
- 기능(안 제3조)
- 조직 및 구성(안 제4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
-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안 제6조)
- 지도·점검 (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29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설치·운영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운영의 방법 및 절차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를 따른다.

②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할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직원(센터장 포함)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른다.

③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센터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면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정신상의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복무위반, 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센터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센터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설 운영발전 등을 위해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관련 시설의 장

2. 지역 주민

3.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청소년 사업 및 시설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들의 상담, 활동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상·하반기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⑨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매년 1회 이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앞에 “제3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참고자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19.>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4. 19.>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1. 29.]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본조신설 2013. 11. 29.]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347호

구월4동경로당 리모델링공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구월4동 경로당의 이용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20.

남 동 구 청



1. 행정예고 내용

○ 구월4동경로당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CCTV 설치

2. 설치목적

○ 구월4동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센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 및 보안성 강화로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하고자 함.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7. 20. ~ 8. 8. (20일간)

4. 의견제출 : 2023. 7. 20. ~ 8. 8. (20일간)

5.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화상정보 보호원칙 : 구월4동 경로당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나.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다.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라. 수집된 정보는 일정기간 저장 후 자동 삭제되며, 권한이 있는 자만 열람 가능

7. 설치장소

○ 구월4동 경로당 내·외부 CCTV 설치

연 번	주소	설 치 장 소	수 량	비 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모래내로 26(구월동)	구월4동 경로당	7대	이용자 및 안전사고 예방

8.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9. 촬영범위 및 시간

- 구월4동 경로당 내부 시설 및 외부 옥상 24시간 촬영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 노인장애인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나. 제출기간 : 2023. 8. 8. 18:00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장애인과 노인여가시설팀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마. 제출방법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1층 노인장애인과
- 팩스 : 032)453-5859(팩스 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사.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11. 문의사항 : 남동구 노인장애인과 노인여가시설팀 ☎ 032)453-2253

사 업 명	구월4동경로당 내·외부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남동구 노인장애인과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85호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 고시

제2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07.19.)에서 의결, 확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19.
남 동 구 청 장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153,044,683	100.00%	1,153,302,066	100.00%	△257,383	△0.02%
일반회계		1,132,122,551	98.19%	1,132,425,635	98.19%	△303,084	△0.03%
특별회계		20,922,132	1.81%	20,876,431	1.81%	45,701	0.22%
	기타특별회계	20,922,132	1.81%	20,876,431	1.81%	45,701	0.2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31,396	0.13%	1,485,695	0.13%	45,701	3.0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18,900	0.00%	18,900	0.00%	0	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특별회계	496,436	0.04%	496,436	0.04%	0	0.00%
	주차장특별회계	18,588,923	1.61%	18,588,923	1.61%	0	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86,477	0.02%	286,477	0.02%	0	0.00%

세 입 총 괄 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총괄

(단위 : 천원)

장·관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132,122,551	100.00%	1,132,425,635	100.00%	△303,084	△0.03%
100 지방세수입	147,078,252	12.99%	157,578,252	13.92%	△10,500,000	△6.66%
110 지방세	147,078,252	12.99%	157,578,252	13.92%	△10,500,000	△6.66%
200 세외수입	52,831,244	4.67%	52,260,617	4.61%	570,627	1.09%
210 경상적세외수입	42,345,955	3.74%	42,676,115	3.77%	△330,160	△0.77%
220 임시적세외수입	6,742,392	0.60%	6,598,515	0.58%	143,877	2.18%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742,897	0.33%	2,985,987	0.26%	756,910	25.35%
300 지방교부세	28,330,000	2.50%	27,390,000	2.42%	940,000	3.43%
310 지방교부세	28,330,000	2.50%	27,390,000	2.42%	940,000	3.43%
400 조정교부금등	108,546,169	9.59%	104,265,784	9.21%	4,280,385	4.11%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108,546,169	9.59%	104,265,784	9.21%	4,280,385	4.11%
500 보조금	696,808,273	61.55%	692,402,369	61.14%	4,405,904	0.64%
510 국고보조금등	519,083,635	45.85%	519,414,971	45.87%	△331,336	△0.06%
520 시·도비보조금등	177,724,638	15.70%	172,987,398	15.28%	4,737,240	2.74%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8,528,613	8.70%	98,528,613	8.70%	0	0.00%
710 보전수입등	98,325,433	8.69%	98,325,433	8.68%	0	0.00%
720 내부거래	203,180	0.02%	203,180	0.02%	0	0.00%

세 출 총 괄 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총괄

【 기 능 별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132,122,551	100.00 %	1,132,425,635	100.00 %	△303,084	△0.03 %
010 일반공공행정	65,576,652	5.79 %	65,042,754	5.74 %	533,898	0.82 %
020 공공질서및안전	9,240,177	0.82 %	8,893,248	0.79 %	346,929	3.90 %
050 교육	13,880,437	1.23 %	13,861,236	1.22 %	19,201	0.14 %
060 문화및관광	17,193,514	1.52 %	16,674,110	1.47 %	519,404	3.12 %
070 환경	51,687,369	4.57 %	51,685,169	4.56 %	2,200	0.00 %
080 사회복지	726,756,137	64.19 %	724,421,850	63.97 %	2,334,287	0.32 %
090 보건	27,738,744	2.45 %	27,328,458	2.41 %	410,286	1.50 %
100 농림해양수산	4,394,691	0.39 %	4,624,519	0.41 %	△229,828	△4.97 %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8,387,577	0.74 %	8,038,582	0.71 %	348,995	4.34 %
120 교통및물류	22,304,219	1.97 %	18,266,719	1.61 %	4,037,500	22.10 %
140 국토및지역개발	49,774,796	4.40 %	44,194,623	3.90 %	5,580,173	12.63 %
160 예비비	9,526,631	0.84 %	23,481,352	2.07 %	△13,954,721	△59.43 %
900 기타	125,661,607	11.10 %	125,913,015	11.12 %	△251,408	△0.20 %

세 출 총 괄 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총괄

【 성 질 별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132,122,551	100.00%	1,132,425,635	100.00%	△303,084	△0.03%
100 인건비	101,212,639	8.94%	101,455,560	8.96%	△242,921	△0.24%
200 물건비	41,498,431	3.67%	40,445,284	3.57%	1,053,147	2.60%
300 경상이전	865,333,686	76.43%	864,402,302	76.33%	931,384	0.11%
400 자본지출	92,020,826	8.13%	80,344,469	7.09%	11,676,357	14.53%
600 보전재원	1,888,313	0.17%	1,688,313	0.15%	200,000	11.85%
700 내부거래	1,384,510	0.12%	1,384,510	0.12%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28,784,146	2.54%	42,705,197	3.77%	△13,921,051	△32.60%

세 입 총 괄 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총괄

장·관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20,922,132	100.00%	20,876,431	100.00%	45,701	0.22%
200	세외수입	9,143,904	43.70%	9,143,904	43.80%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4,338,504	20.74%	4,338,504	20.78%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980,400	4.69%	980,400	4.70%	0	0.00%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825,000	18.28%	3,825,000	18.32%	0	0.00%
500	보조금	1,971,700	9.42%	1,971,700	9.44%	0	0.00%
	510 국고보조금등	1,117,740	5.34%	1,117,740	5.35%	0	0.00%
	520 시·도비보조금등	853,960	4.08%	853,960	4.09%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806,528	46.87%	9,760,827	46.76%	45,701	0.47%
	710 보전수입등	9,617,478	45.97%	9,571,777	45.85%	45,701	0.48%
	720 내부거래	189,050	0.90%	189,050	0.91%	0	0.00%

세 출 총 괄 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총괄

【 기 능 별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0,922,132	100.00 %	20,876,431	100.00 %	45,701	0.22 %
010 일반공공행정	141,596	0.68 %	95,895	0.46 %	45,701	47.66 %
070 환경	496,436	2.37 %	496,436	2.38 %	0	0.00 %
080 사회복지	1,389,800	6.64 %	1,389,800	6.66 %	0	0.00 %
120 교통및물류	17,049,648	81.49 %	17,049,648	81.67 %	0	0.00 %
140 국토및지역개발	305,377	1.46 %	305,377	1.46 %	0	0.00 %
900 기타	1,539,275	7.36 %	1,539,275	7.37 %	0	0.00 %

세 출 총 괄 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총괄

【 성 질 별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0,922,132	100.00%	20,876,431	100.00%	45,701	0.22%
100 인건비	1,501,507	7.18%	1,501,507	7.19%	0	0.00%
200 물건비	1,073,602	5.13%	1,068,070	5.12%	5,532	0.52%
300 경상이전	4,694,766	22.44%	4,653,066	22.29%	41,700	0.90%
400 자본지출	2,415,559	11.55%	2,434,831	11.66%	△19,272	△0.79%
700 내부거래	303,396	1.45%	303,396	1.45%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10,933,302	52.26%	10,915,561	52.29%	17,741	0.16%